

석유제품 공급계약 체결 전 주요 확인사항

- 공사 직원은 공급계약 체결 전 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및 고지하고 있으며, 사업자가 공급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전환상담 및 신청, 계약과정 중 공사 직원으로부터 구두설명 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공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대하여 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- 따라서, 본 안내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공급계약 의무사항 준수

사업자는 「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서」에 따른 제반 의무사항(의무구매량, 석유 품질인증프로그램 가입 및 품질점검 수용, 평가자료(판매량, 구매량 등) 제출, 적정판매 가격 유지, 공급제품의 전용금지, 기타 제반 법규준수 등)을 이행 및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시 공급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※ 알뜰주유소 시설개선공사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영업개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 될 수 있습니다.

② 시설개선 하자관리

시설개선 지원된 주유소 시설물의 관리의 책임주체는 전적으로 주유소 사업자의 책임입니다.

시설개선 준공검사 후 발생하는 하자처리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시공업체에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하오니 시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사항에 대하여 시공업체에 직접 처리요청하시기 바라며, 이행이 없는 경우 보증증권회사에 하자이행보증금을 직접 청구하시기 바랍니다.

③ 계약이행(지급)보증 제출

시설개선공사 착수 전 공급계약 및 시설개선지원 의무이행에 대한 이행보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또한, 시설개선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의 승인 없이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공급계약은 즉시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공사의 승인 후 승계인의 공급계약 기간은 1년으로 신규 적용되며 계약이행보증을 신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승계인이 이행보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즉시해지 될 수 있으며, 기존 사업자가 이행을 부담함

④ 상표 및 상호사용

알뜰주유소로 영업 후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로 종료된 경우 알뜰상표 표시 시설물은 사업자가 스스로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, '알뜰'이 포함된 상호 또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※ 위반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

위에도 불구하고, 계약종료 1개월 이내 철거 미이행시 공사가 직접 출입하여 강제철거 후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⑤ 통지의무

대표자·상호·주소·영업장소의 변경 또는 합병·분할 등 기본적인 변경사유 발생시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주유소 매각·임대전환·기타 당사자에 관한 중요 사항의 변경으로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공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합니다.

※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를 사전 서면동의 없이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는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될 수 있음

⑥ 공지사항 확인

공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영업조직을 운용하지 않습니다.

이에 따라, 공급가격·전자상거래·배송·재고 등 주문수송관련 사항, 계약관련사항,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, 각종 안내 및 홍보, 공지사항 등을 알뜰통합정보시스템 (<http://ecos.knoc.co.kr/login.action>) 을 통하여 공지하고 있사오니, 동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주유소의 책임입니다.

【사업자 확인】

- ① 공사 담당자로부터 위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- ① 위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공사의 계약상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주유소명

주 소

대 표 자

(인)